◉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006호

산업통상부장관은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25-165호, 2025.10.1.)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-100호, 2025.06.30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

2025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

기 존	변 경	비 고
업체명 : 성보공업(주) 업 종 : 철강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138 적용기준 : 사업장	업체명 : 주식회사 성보 업 종 : 철강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138 적용기준 : 사업장	업체명 변경

2025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취소

기 존	변 경	비 고
업체명 : (주)케이에프엔티 업 종 : 석유화학 소재지 :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84 적용기준 : 사업장	< 삭 제 >	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(주)에 흡수합병

□ 이의신청

○ 관리업체 지정·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25-165호, 2025.10.1.) 제21조(별지 서식 제5호)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
□ 재검토기한

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문의처

○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 : 044-203-4135

○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: 052-920-0577